

인도네시아, 수입제품의 자국어 라벨링 의무화 규정 조기시행

8월말까지 중소 수출기업의 신속한 준비 필요

개요

- 10.5.21일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니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·통신제품군 등 4개 제품군의 포장에 인니어 표기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하고, 이를 10.9.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

※ 적용대상 제품군 : 전기전자제품군, 건축자재 제품군, 자동차(수리부속 포함) 관련 제품군 및 기타 생활용품군의 4개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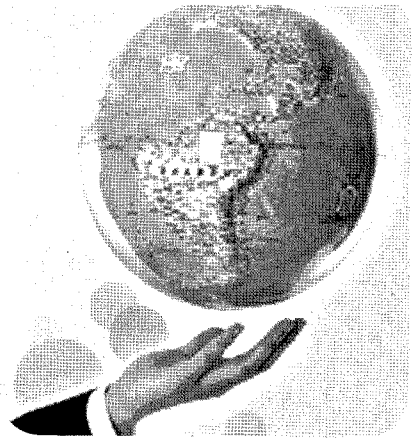
- 우리 제품 중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의 비율은 HS

code 2자리 단위기준으로는, '09년 대인니 수출액 59.9억\$ 중 26.9억\$로서 약49%이며,

- 라벨 표기내용은 상품명(또는 브랜드명), 제조자명·주소, 수입자명·주소, 제조국 등이나, 그 내용이 제품마다 다소 상이하고, 묶음(bulk)판매 제품, 소비자와의 거래시 포장되는 제품 및 원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은 라벨링이 면제되므로 제조자마다 인니규정의 조속한 확인이 요구됨

※ HS code(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: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) 6자리 기준을 적용하고, 원자재를 고려하면 대상 금액이 크게 감소될 수 있으나, 최근의 대인니 수출증가 및 신규수출 제품의 확대추세를 고려 시, 금번 라벨링 규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긴급

※ 전기제품의 라벨에는 제품유형, 전압, 주파수(Hz) 등이, 도금된 금속봉의 라벨에는 직경, 길이, 도금두께 등이 추가되는 등 제품마다 라벨내용이 상이



- 특히 중소 수출업체가 규제의 9월시행, 라벨 표기방법 및 라벨링 면제대상 관련정보를 늦게 알게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, 인니규정을 번역하여 기술표준원 TBT중앙사무국,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함

※ TBT중앙사무국 : <http://www.knowtbt.kr/reg/RegLoc01.aspx>

- 인니 정부는 '09.11월 '10.12.21일부터 라벨링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, 금번에 라벨링 면제 제품군을 4개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조치와 유예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하는 규제 강화조치를 병행

※ '09.11월 규정에서는 라벨링 면제 원자재를 자동차 관련 제품군으로만 한정

조치사항 및 향후계획

-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'09.11월 인니 정부의 발표이후,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하여, 원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재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인니 정부에 요구하였으며,
- '10.4월 인니 정부가 라벨링 규정을 '10.7월부터 시행코자 한다는 현지 정보를 입수한 후, 4.21일 인니 TBT질의처인 BSN에 서한을 발송, 조기시행시 TBT위원회로의 통보 및 통보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이행 준비기간을 부여를 요구하였던 바
- 금번 인니의 면제 제품범위 확대 및 '10.9월 시행 조치에는 우리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- 향후 기술표준원은 현지공관, 무역협회 등과 협조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시 인니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업체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

